

[산업간호와 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0. 8.26]

[대통령령 제22349호, 2010. 8.17, 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고, 노사관계 발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며, 노사발전재단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318호, 2010. 5. 25. 공포, 8. 26.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노사관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발전재단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지원(안 제2조)

1)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안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노사민정 간 협력 활

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법률에서 위임된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노사관계·고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노사관계발전정책을 조사·연구할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노사발전재단의 지도·감독 등(안 제9조)

1)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발전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노사발전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사발전재단은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고, 사업연도가 끝난 후에는 사업보고서 및 지출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발전재단이 법이나 설립목적을 위반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